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85
----------	------

발의연월일 : 2024. 4. 11.

발의의원 : 이연숙 의원,

신동윤 의원, 최재규 의원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58조·제59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개정사항과 실제 의회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의회운영과 행정  
에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의회사무국장 대리 변경(직제순 팀장→선임전문위원)(안 제2조제2호)
- 나. 선임전문위원 대리 신설(직제순에 따른 팀장)(안 제2조제3호)
- 다. 지정대리 규정 명확화(안 제3조)

## 3. 개정 규칙안 : “붙임”

##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59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국” 을 “사무기구”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가” 를 “각 호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팀장” 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선임전문위원”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선임전문위원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 을 “제1항 및 제2항” 으로 한다.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1. 의장 대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중에서 다선 순위로 하

되, 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위

2. 의회사무국장 대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중 “제3조 규정” 을 “제3조” 로, “자는” 을 “사람은” 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법정대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결원 등”이라 한다)가 있어 해당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p> <p>1. (생략)</p> <p>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의회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u>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u></p> <p>&lt;신설&gt;</p>	<p>제1조(목적) -----            --- 사무기구-----            -----            -----.</p> <p>제2조(법정대리) -----            -----            -----            -----            ----- <u>각 호에서</u>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선임전문위원</u>---</p> <p>3. <u>「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선임전문위원이 결원 등이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대</u></p>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중에서 다선 순위, 그 순위가 같은 경우 연장자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의장을 대리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의회사무국장을 대리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1. 의장 대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중에서 다선 순위로 하되, 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위

2. 의회사무국장 대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제4조(책임) ----- 제3조-----  
----- 사람은 -----  
-----.

□ 「지방자치법(법률)」(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6.27. 일부개정 2023.9.28. 시행)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